제1차산업경제위원회
2014.1.17(금) 10:00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경 제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나기성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 김도경 의원 외 7명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1월 8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1월 9일

3. 제안 이유

○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지사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3년마다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안 제5조)

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도의 재산 또는 시설과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에 관련 법규에 따른 대부료의 감면,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협동조합 설립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안 제11조)

라. 사회적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안 제12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내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 건설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민주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 법 적합성,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됨으로써 도내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

○ 다만, 최근 정부가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향후 충북도의 지원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